

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조 (용어의 정의)	12. 카. JP 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 타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 파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	12. 카. JP 모간 중동&아프리카 증권투자신탁(주식) 타. JP 모간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주식) 파. JP 모간 천연자원 증권투자신탁(주식) <u>하. JP 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투자신탁(주식)</u>
제 5 조(신 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 기간)	신설구문	② 이 신탁계약은 본 조 제 1 항에 의한 효력 발생일로부터,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당사자간 2010 년 8 월 19 일에 체결되어 있던 기존 신탁계약을 대체하고 이에 우선한다.
제 25 조의 2(투자신탁 간의 전 환) ②	1. JP 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투자신탁(주식)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	1. JP 모간 뿌리깊은나무 증권투자신탁(주식) <u>및 JP 모간 코리아트러스트 증권투자신탁(주식)</u> 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(15 시 경과 후 전환청구시 제 3 영업일)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. 이 경우 전환대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.